



코로나19 위기단계 ‘경계’ → ‘관심’ 하향 주요 변경사항

구분	현행 (경계)	변경 (관심)
1 방역조치	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	
마스크 감염취약시설	•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•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	권고 전환
확진자 격리	• 5일 권고 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	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
2 의료지원	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·치료, 치료제·백신 지원은 유지	
진단검사비 (본인부담금)	유증상자	
	• 먹는치료제 대상군	PCR 0원 → 1~3만원 대 (건보 지원 계속) RAT 6~9천원 → 종전과 동일 (건보 지원 계속)
	•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• 응급실 내원환자 • 중환자실 입원환자	RAT 6~9천원 → 종전과 동일 (건보 지원 계속)
	무증상자	
	•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·분만 환자	PCR 0원 → 5~6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
	• 고위험 입원환자	RAT 비급여 → 종전과 동일
	•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·입소자	
	• 보호자·간병인	PCR 0원 → 3~4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
입원치료비	•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	건보 지원 유지, 국비 지원은 종료* *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
치료제	• 무상공급	1인 5만원* 정부 공급·지원체계 유지 *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
백신접종	• 전 국민 무료접종	유지 ('23~'24절기까지)
3 감시·대응	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	
감시체계	• 코로나19 양성자 감시	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
대응체계	• 중수본(복지부) 및 방대본(질병청)	코로나19 대책반 (질병청)